

내 집, 내 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
- 내 집앞, 내 점포앞 눈치우기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-

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가 2006년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.

- 「자연재해대책법」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·이면도로·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·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위임된 구체적인 제설·제빙범위 및 시기 등에 대하여 우리시 조례로 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
- 우리시는 도로 총연장이 8,093km에 달해 일시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소요되는 제설작업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.

○ 따라서, 시민과 함께하는 자율적인 제설작업체제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실정이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.

▶ 시민과 함께 하는 제설작업 역할 분담 내용은

- 주요도로(차도) 등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는 행정기관이 수행하고
- 보도·이면도로 등 생활도로는 시민이 제설작업을 시행하여야 함

▶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범위·방법 및 시기 등 내용은

-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

-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자 순
- 건물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, 관리자, 소유자 순

-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

-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
-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(당일 10cm이상은 24시간 이내)

-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

- 보 도 : 당해 건물 대지에 접한 구간 (보도전체)
- 이면도로 : 주거용 건물은 주 출입구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
비주거용 건물 :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의 구간



내 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

"2006년 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·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"

내 집 내점포앞 눈은 내가 치워 내가족 내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!!!

■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

-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·점유자 및 관리자 순
-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·관리자 및 소유자 순

■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

-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
-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,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

■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

- 보도 :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(보도 전체)
-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
 - 주거용 건물인 경우 :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
 -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: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

보도의 눈을 치우는 범위

뒷길의 눈을 치우는 범위

비주거용 건물인 경우

주거용 건물인 경우

서울특별시 www.seoul.go.kr

자료제공 :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02)2133-8197